

# 대구예술대학교 예술치료센터 운영규정

(제정 2010.08.13. 법인이사회)

(개정 2019.06.20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(개정 2024.03.25. 교무위원회)

## 제 1 장 총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 예술치료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명칭)** 본 센터는 대구예술대학교 부설 예술치료센터라 한다.

**제3조 (위치)** 본 센터는 대구예술대학교 교육관 내에 둔다.

**제4조 (사업)**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예술치료(미술치료, 음악치료, 언어치료)에 관한 임상분석 등 이론적·실증적 연구 및 치료실습
2. 예술교육 및 예술 치료 분야의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
3. 국제교류 및 프로그램 공동개발 연구
4.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
5. 예술교육 및 예술 치료 관련 자료 및 연구 도서 발간
6.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

## 제 2 장 조직

**제5조 (조직)** 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 내에 센터장, 연구원, 조교를 둘 수 있다.

**제6조 (센터장)** ① 센터장은 우리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7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(2024.03.25.)

②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7조 (연구원)** ① 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 센터의 제반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.

**제8조 (조교)** 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조교를 둘 수 있다.

## 제3장 운영위원회

**제9조 (위원회 설치)** 센터의 운영, 정책,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10조 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연구원은 위원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
**제11조 (위원회 회의)**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

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2조 (심의사항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3.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
## 제 4 장 회계

**제13조 (재정)** ① 센터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르며,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센터의 예산편성과 결산 및 집행은 센터장이 행한다.

③ 수입금은 연구원과 센터 수입을 60 : 40 비율로 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(2024.03.25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